물리치료학과 보건의료대학원 석사과정 내규

제정 2016. 3. 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과정 물리치료학과 대학원생의 졸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졸업 요건)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학위논문 요건)

① 학위논문의 작성 자격으로, 4학차 이전에 국내외 학술지에 사전 논문을 한 편 이상 출판하거나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 논문은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대학원생 본인이 제1저자이어야 한다.
- 사전 논문은 논문 형태에 제한 받지 않는다.
- 3학차 이전에 본인이 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등재된 사전 논문이 국내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Scopus, Medline)에 출판되거나 게재 예정된다면, 이를 학위논문으로 인정하며, 대학원생은 이 논문을 보강하여 학위논문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ical trial), 조사연구(survey), 고찰연구(review article)(systemic review, Meta analysis)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대학원생 본인이 1저자인 증례보고(case report, case series), 단일사례연구(single-subject experimental design), 소수의 대상자를 포함한 사전연구(pilot study)(one group pretest-posttest study) 등의 연구 디자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내전문학술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에 출판되거나 게재 예정될 경우에 한해서 학위논문으로 인정한다.

제4조 (지도교수의 선정과 역할)
지도교수는 1학차에 정하며, 대학원생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논문 작성, 제출, 학술지 투고, 저자 포함 등)은 지도교수의 지도와 책임 아래에 진행한다.

제5조 (내규의 변경)
이 내규는 물리치료학과 교수들 중 2/3의 동의 하에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외의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 내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적용)
이 내규는 2015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오덕원	이준희	손성민	윤태림